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5월 26일

나. 발 의 자: 이규선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내 장기기증 문화의 확산 및 장려를 위해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예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기등기증희망자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3조)

○ 장기등기증자·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정의)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예우 및 지원)에서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해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의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 안 제12조(표창)는 장기기증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기존의 장기등기증자뿐만 아니라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해서까지 예우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2022년에 개정된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된 내용보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기등기증자는 4,478명(전년 대비 0.79% 증가)이었으며, 이식 대기자는 48,472명(전년 대비 12.3% 증가)으로 장기등기증에 관한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서울시 자치구별 2021년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등기증희망자는 15,707명으로 인구 대비 기준, 25개 자치구 중 19위로서 하위권에 속함.
 - 본 개정을 통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기등 인체조직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예우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우 및 지원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
----------	-----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이규선, 신흥식, 양송이,
이순우, 우경란, 임현호
의원(6인)

1.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에 영등포구내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예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안 제11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5. 31. ~ 6. 5.)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기기증자”를 “장기등기증자”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생존 시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등

제11조의 제목 “(예우)”를 “(예우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기기증”을 “구청장은 장기기증”으로,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할”을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4.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5. 감사장 수여(영등포보건소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②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u>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장기기증등록자</u>”란 영등포구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p> <p>2. “<u>장기기증자</u>”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를</p>	<p>제 1 조 (목 적)</p> <p>-----</p> <p>-----</p> <p>-----</p> <p>-----</p> <p>----- <u>장기등기증자</u></p> <p>-----</p> <p>-----.</p> <p>제 3 조 (정 의)</p> <p>-----</p> <p>-----.</p> <p>1. “<u>장기등</u>”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u>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p> <p>2. “<u>장기등기증자</u>”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p>

말한다.

<신 설>

3. (생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 6. (생략)

7. 장기기증등록자 등

제11조(예우)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생존 시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등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 장기기증 -----
-----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장

<신 설>

<신 설>

<신 설>

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4.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5. 감사장 수여(영등포보건소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②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

<p><신 설></p> <p><u>제12조 · 제13조</u> (생 략)</p>	<p><u>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2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u></p> <p><u>제13조 · 제14조</u>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p>
--	--